

9.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0년 4월 9일
- 발 의 자 : 홍인표 의원, 김대현 의원, 배지숙 의원, 윤영애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임태상 의원, 장상수 의원, 정천락 의원, 하병문 의원, 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4월 13일
- 상정일자 : 제27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0년 4월 23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홍인표 의원)

### □ 제안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9.12.3.)에 따른 과태료 감면 규정(‘20.6.4. 시행 예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 되겠음.

## □ 주요내용

- 금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 임의로 규정되었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연구역을 상위법과 같이 강제하여 별도로 규정(안 제4조제1항)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 신설(안 제4조제2항 제5호)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창업)

###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3조**는 금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4조제1항**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상위법을 반영하여 강제규정으로 하고, **제2항**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경우 지정하도록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음.

- **안 제11조제2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과태료 감면 규정 등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설·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대구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70,925개소, 시 및 구·군 조례에 따라 4,226개소 등 총 75,151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위반자에 대하여 1,572건, 1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다만, 상위법 개정과 조례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만큼, 향후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등이 정해진 이후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으며,
- 아울러, 지역의 건전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건강증진사업과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대구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대구시와 구·군이 함께 금연 홍보와 안내를 통해 금연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연 치료 지원, 금연 서포터즈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